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개방형 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변인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, 직원의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(9급 1명)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6. 27. ~ 7. 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2명(5급 1명, 6급 1명)과 법령심사,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명(5급 5명, 6급 1명)”을 “2명(5급 1명, 6급 1명), 법령심사·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명(5급 5명, 6급 1명)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(9급 1명)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법제처 직제」 제4조의 대변인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 략)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(4급 또는 5급 1명),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<u>2명(5급 1명, 6급 1명)</u> 과 법령심사,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<u>6명(5급 5명, 6급 1명)</u>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 ③ (생 략)	제11조(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2명(5급 1명, 6급 1명)</u> , 법령심사·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<u>6명(5급 5명, 6급 1명)</u> 과 <u>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(9급 1명)</u> --. ③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 ① (생 략) ②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 <u>1. 제4조제7항의 법제교류협력 담당관</u> 2. 3. (생 략)	제12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<u>1. 「법제처 직제」 제4조의 대변인</u> 2. 3. (현행과 같음)